#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허5706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형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론종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6. 22.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10. 7. 2022당19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대상 물품: 옹벽블록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4. 12./ 2014. 7. 9./ 디자인등록 제752340호
-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1과 같다.

##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 1) 대상 물품: 옹벽블록
- 2) 도면: 별지 2와 같다(심판청구서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2. 1. 2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2. 10. 7.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심결을 하였다(2022당19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나. 피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때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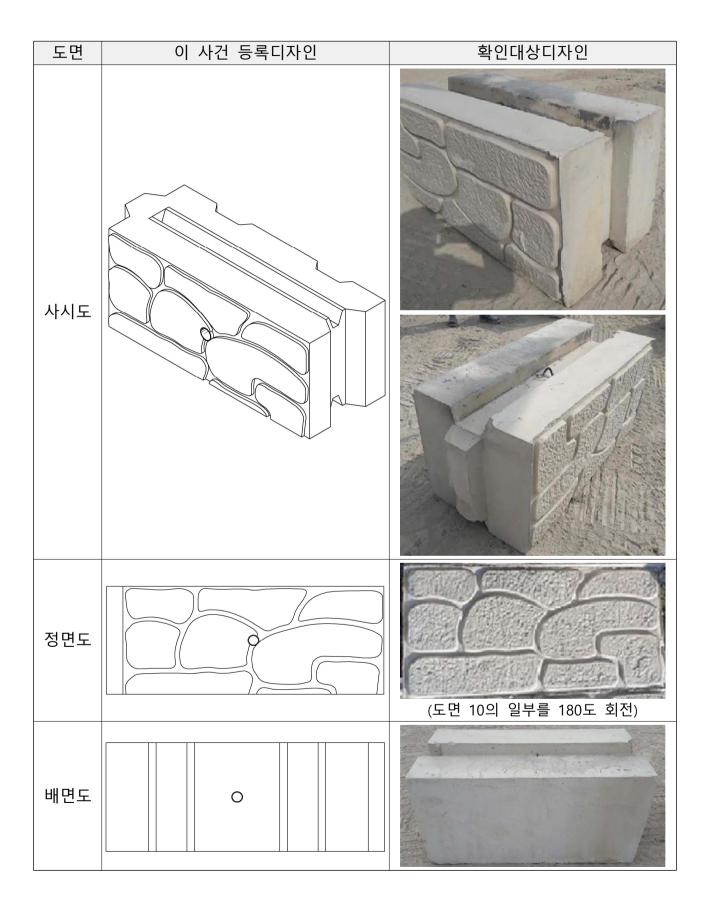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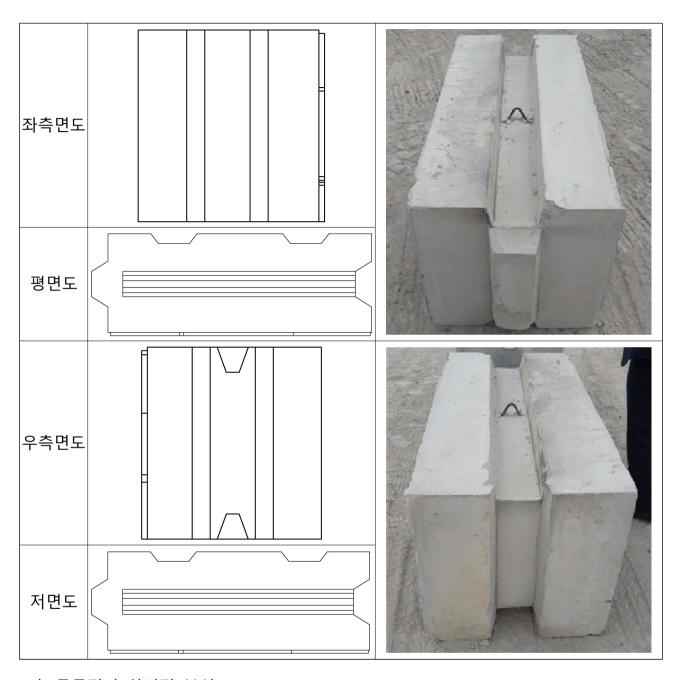
#### 나. 대상 물품 비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옹벽블록'으로 같다.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도면과 각각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사진)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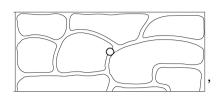




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으로, ② 정면에 자연석을 불규칙하게 쌓아올린 것처럼 보이는 무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점 (확인대상디자인을 180도 회전했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늬와 더 비슷해진다,





), ③ 한쪽 측면 중앙에 다른 블록

오목부와 결속할 수 있게 사다리꼴 기둥 형상으로 튀어나온 돌기부가 있고, 반대 측면 중앙에는 다른 블록 돌기부와 결속할 수 있게 같은 형상으로 들어간 오목부가 있어서

좌우 요철(凹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점(







④ 위아래에 배수를 위한 홈이 있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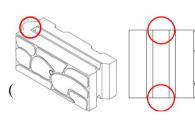




등에서 공통된다.

# 2) 차이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기부 쪽 측면 배수 홈의 상·하단이 닫혀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돌기부 쪽도 오목부 쪽 측면처럼 배수

홈 상·하단이 일정한 높이로 열려 있고 돌기부 상·하단에 완만한 경사가 있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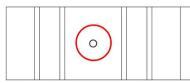




, 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 한가운데에 배면까지 뚫린

배수공이 있으나(





), 확인대상디자인

에는 배수공이 없는 점(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배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2개의 홈이 있는 반면(



대상디자인에는 홈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마. 공통점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들은 공지의 형상과 모양에 해당하여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1) 공통점 ①

옹벽은 흙의 압력으로 비탈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을 뜻한다(표준국어 대사전 참조). 옹벽블록은 가지런히 쌓아 올려 옹벽을 시공하는 데 쓰는 균일한 형상의 덩어리로. '블록(block)'은 보통 사각형 덩어리를 뜻한다.1)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을 띠는 옹벽블록은 흔하다고 인정된다.

#### 2) 공통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정면부의 '자연석을 불규칙하게 쌓아올린

<sup>1)</sup> 이를테면, 'block'의 뜻으로 옥스퍼드 영한사전(제9판)은 "(단단한) 사<u>각형</u> 덩어리"라는 뜻을, 콜린스 영영사전(제 10판)은 "건축에 사용하기 위한, 평평한 직사각형 측면을 가진 크고 단단한 나무, 돌, 그 밖의 재료 조각(a large solid piece of wood, stone, or other material with flat rectangular sides, as for use in building)"이라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네이버 사전 참조, 밑줄은 인용하면서 추가한 것).

것처럼 보이는 무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늦어도 2011년에 공지된 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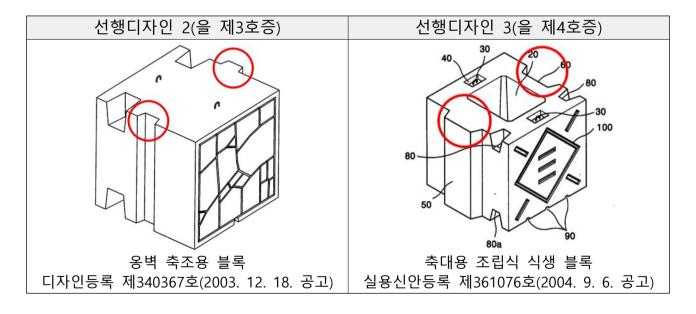
산업의 '크랭크유로폼(WR1201A)' 문양거푸집(

)2) 무늬(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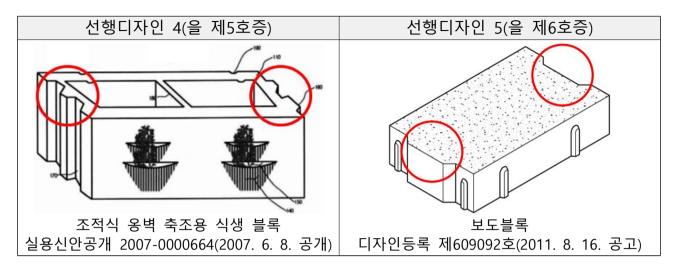
디자인 1, 을 제2호증 3쪽)와 유사하다고 인정된다(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등이 굳은 후 거푸집을 해체하면 좌우가 바뀌어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은 무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들 사이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차이에 불과하여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는 보기 어렵다.

#### 3) 공통점 ③

왕벽블록의 좌우 요철 구조는 여러 개의 블록을 결속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과 같이 그와 유사한 여러 블록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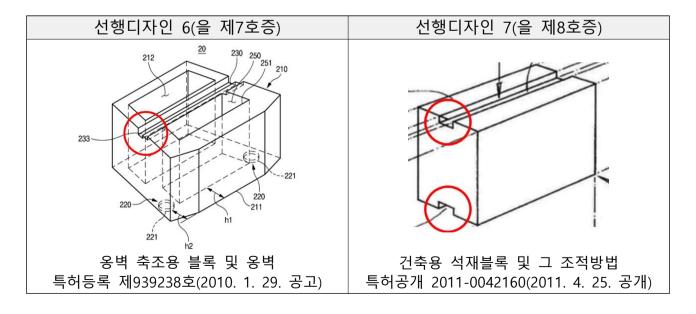
<sup>2)</sup> 문양거푸집은 각종 건축물 외벽이나 옹벽의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찍어내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재이다 (피고 2022. 12. 13. 자 준비서면 4쪽 참조). 피고가 제출한 우림산업 2009년판 카탈로그(을 제1호증)의 '크랭크 유로폼'은 해상도가 낮아 무늬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어려우나, 모델번호 등에 비추어 2011년판 카탈로그(을 제2호증)의 '크랭크유로폼'과 같은 제품이라고 보인다. 설령 그 무늬가 2011년에 비로소 공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보다는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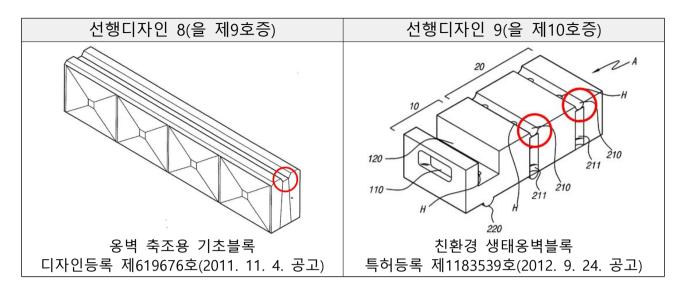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다리꼴의 구체적 형상(평행하는 변과 평행하지 않는 변의 길이 비, 평행하지 않는 변의 기울기 등)과 개수 등 측면에서 선행 디자인들의 좌우 요철 구조와 차이가 있으나,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 4) 공통점 ④

왕벽블록의 위 또는 아래에 배수를 위한 홈이 형성된 디자인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블록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수 홈은 사다리꼴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배수 홈은 직사각형이어서 배수 홈의 구체적 형상이 다르다. 그러나 사다리꼴 배수 홈은 선행디자인 8에 개시되어 있고, 이들 배수 홈의 구체적 형상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 정도로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단뿐 아니라 하단에 홈이 있는 디자인도 선행디자인 7에 개시되어 있다.

# 바. 차이점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들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된다.3)

#### 1) 차이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돌기부 쪽 측면 배수 홈의 상·하단이 닫혀 있는 형태는 앞서 본 선행디자인 6 내지 9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만의 특징적인 부분이고,

<sup>3)</sup>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상단 배수 홈에 앵커(견인 고리)가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러한 고리가 없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별지 1의 참고도1에서처럼, 이 사건 등록디자인도 실제로 사용할때는 상단 배수 홈에 앵커를 설치한다고 보이는바, 앵커의 유무와 모양을 두 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점 ❶, ❷, ❸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 돌기부 상·하단의 완만한 경사 역시, 제작 당시에 공지되었거나 널리 알려진 형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 2) 차이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 한가운데에 배수공이 있어 성토지 또는 절개지에서 누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별지 1 '디자인의 설명' 제4항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형상이 옹벽블록의 배수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배수공은 눈에 잘 띄는 정면 한가운데에 있어 배수공이 없는 확인대상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 3) 차이점 3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배면 좌우에 나란히 있는 오목 홈 2개는 그러한 홈이 없는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입체감을 주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배면의 오목 홈 2개는 그 공간에 흙이 들어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함으로써 블록과 토사의 결합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재료비, 물류비를 절감시켜 주는 기능적인 부분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 1 '디자인의 설명' 제5항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형상이 블록과 토사의 결합력 증진 등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옹벽블록의 배면부는 토사와 접하는 부분으로, 시공 후에는 일반 수요자 가 그 디자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 소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

####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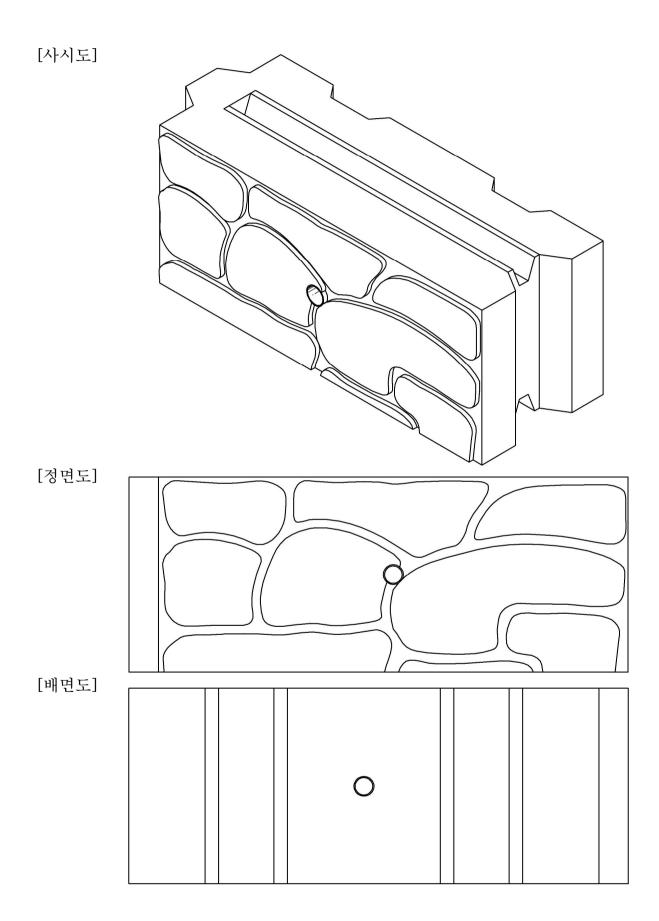
#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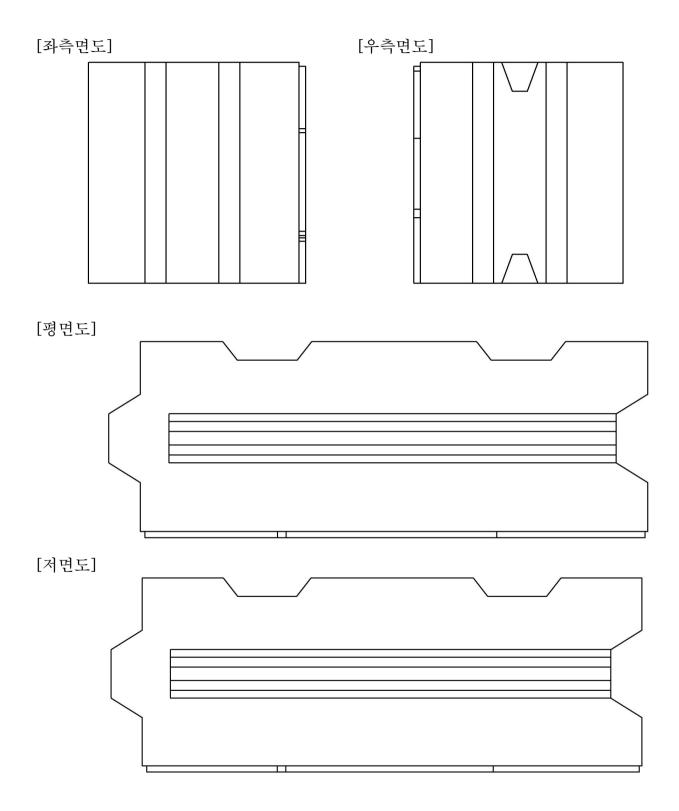
##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콘크리트재, 바텀애쉬, 석재, 황토와 모르타르재를 사용한다.
- 2. 본 디자인은 담장, 옹벽 또는 제방 축조용 블록으로 사용한다.
- 3. 블록과 블록 간의 이음부에 모르타르 등의 이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직립으로 축조 가 가능하여 석조물 대용으로 축조 시 바닥 면적이 적다.
- 4. 블록의 상부면과 하부면에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가 형성되고, 블록의 좌 측면에 돌기부가 형성되고 그 우측면에는 오목부를 두어 상호 결합하는 것이며, 블 록의 수평방향으로 배수공이 관통되어 성토지 또는 절개지 등에서 누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다.
- 5. 배면의 일측에 다수개의 오목홈부를 형성하여 블록과 토사 간의 결합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재료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 6. 상/하부 블록을 직립으로 적치하여 축조 시, 블록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블록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의 상부면과 타블록의 하부면에 형성된 배수로 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직립된 블록이 상호 견고하게 결합하도록 한다.
- 7. 블록의 정면에 자연석 무늬의 암석을 조합하여 층상으로 조립한 모양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자연미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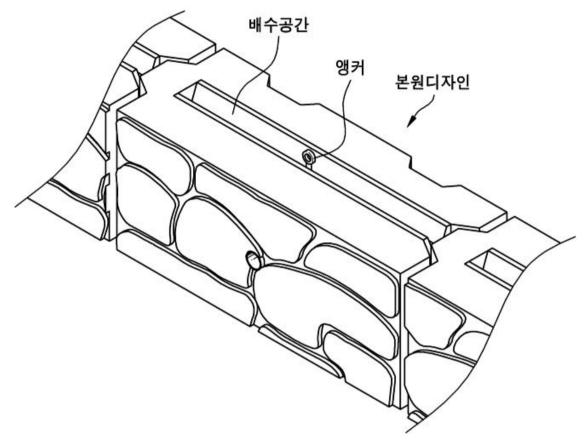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옹벽블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한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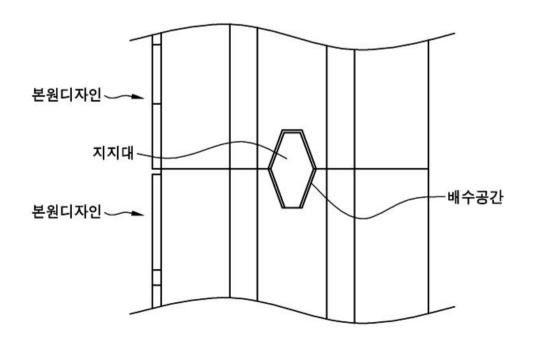




# [참고도1 - 사용상태도]



[참고도2 - 본원디자인의 측면을 도시한 도면]



끝.

# 별지 2

#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사진)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5]



[도면 6]



[도면 7]



[도면 8]



# [도면 9]



[도면 10]



끝.